

의 안 번 호	제828호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지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 월 일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8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일
발 의 자 : 박지현,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이동우, 이상정,
박봉순

1. 제안이유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4.1.16.)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2. 주요내용

- 법령에 따라 조례 지원대상을 확대함(제2조, 제7조)
 - (현행) 영주귀국주민 1세,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개정) 영주귀국주민 1세, 동반가족(1세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을 말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영주귀국주민 1세의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 -----. 1. 영주귀국주민 1세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영주귀국주민 1세의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8조(조례의 제정)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주민 복지향상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장례식비, 교통비)

3. 관련조문

- 안 제8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장례식비 및 교통비는 기추진 중인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의 2024년 사업의 산출기초 반영
- 지원대상 수는 5년간 연평균 지원대상자 수에 사업대상자가 고령임을 고려하여 수요 증가를 대비한 사업대상 규모 1.85배 계상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	
	총 사업비	도비 ^{20%}	시군비 ^{80%}		
합계	43,600천원	8,720천원	34,880천원	명수	1인당 지원단가
장례식비	14,000천원	2,800천원	11,200천원	7명	× 2,000천원
교통비	29,600천원	5,920천원	23,680천원	37명	× 800천원

※ 산정기준 : 2024년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사업 산출내역(노인복지과 -5257, 2024.04.29.)

※ 사할린 한인 주민 장례식비 지원대상

- 5년간 지급대상 : ('19) 4명, ('20) 4명, ('21) 5명, ('22) 2명, ('23) 4명
- 평균 4명 지원 ⇒ ('26) 7명, ('27) 7명, ('28) 7명, ('29) 7명

※ 사할린 한인 주민 교통비 지원대상

- 5년간 지급대상 : ('19) 42명, ('20) 2명, ('21) 35명, ('22) 2명, ('23) 15명
- 평균 20명 지원 ⇒ ('26) 37명, ('27) 37명, ('28) 37명, ('29) 37명

나. 추계 결과

- 장례식비 : ('25년)14,000, ('26년)14,000, ('27년)14,000,
('28년)14,000, ('29년)14,000천 원
- 교 통 비 : ('25년)29,600, ('26년)29,600, ('27년)29,600,
('28년)29,600, ('29년)29,60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비 : 도비(20%), 시군비(80%)
- 도내 3개 시군(청주,제천,음성)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높고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적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0	0	0	0	0	0
장례식비	0	0	0	0	0	0
교통비	0	0	0	0	0	0
세 출	43,600	43,600	43,600	43,600	43,600	218,000
장례식비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교통비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148,000
재원 조달	43,600	43,600	43,600	43,600	43,600	218,000
도비	8,720	8,720	8,720	8,720	8,720	43,600
시군비	34,880	34,880	34,880	34,880	34,880	174,400